

표창 규정

제정 1993. 3. 10. 개정 2001. 9. 1.
전문개정 2013. 3. 1. 개정 2017. 5.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표창의 공정과 표창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표창대상자는 대경대학교의 교직원과 외부인사로 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공적상, 근속상 및 협조상으로 한다.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근속상에 있어서는 표창장 또는 공로패를, 협조상에 있어서는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한다.

② 전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정년퇴직 표창의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부상을 수여한다.

1. 10년 미만 근속의 경우 : 일금 30만원
2. 10년 이상 근속의 경우 : 일금 50만원
3. 20년 이상 근속의 경우 : 일금 100만원

제5조(표창시기) ① 표창의 시기는 정기표창과 수시표창으로 나눈다.

② 정기표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공적상 : 개교기념일(5월22일)
2. 근속상 : 개교기념일(5월22일)

③ 수시표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순직자 또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표창
2. 의전상 관례적인 표창
3.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표창
4. 협조상

제6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 또는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에 제안하여 학교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4. 공적상의 경우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있으며 공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단, 지급 포상 금액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이 포상한다. <개정 2017.5.23.>

제7조(근속상) 근속상은 본 대학 교직원으로서 개교기념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근속자중 근속기간 동안 학교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포상을 수여 할 수 있다.

1. 10년 이상 근속의 경우 : 일금 50만원
2. 20년 이상 근속의 경우 : 일금 100만원

제8조(협조상) 협조상은 대경대학교 발전에 적극 협조한 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수여한다.

제9조(표창의 추천) 표창의 추천은 총장, 일반행정기관의 장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다.

제10조(공적심사) 표창대상자 및 표창추천대상자의 공적 심사는 총무처에서 한다.

제11조(표창대상자의 선발) ① 표창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에 엄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 목적과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의 질적, 양적 면에서 뚜렷하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
3.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사항에 비추어 적절한가의 여부
4. 유사한 내용의 타공적자와의 균형
5. 대상자의 흠결사유 유무
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
7. 표창이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
8. 기타사항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3. 근무성적 평점점수가 많은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히 지대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 또는 포상을 추천할 수 없다.

1.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직위해제 후 복직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 조치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직무와 관련하여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경고를 받은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동일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았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